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79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1. 20.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구 ■■■동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9. 9. 25. 2교시, 3교시 시간에는 학교 복도에서, 3교시 쉬는 시간

에는 학교 계단에서 ○○○ 학생이, 청구인과 AAA, BBB, CCC, DDD, EEE, FFF 학생들(이하 ‘이 사건 가해 학생’ 이라 한다)과 함께 교우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 학생이 2019. 9. 24. 다른 무리의 친구들과 다니려고 얘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 라 한다)를 하였다.

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는 2019. 10. 24.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그 보호자, FFF과 그 보호자, CCC와 그 보호자, EEE, DDD, ○○○과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 학생이 주장한 EEE 학생을 중심으로 나머지 학생들이 따돌렸다는 주장은 단체 메신저 내용이나 이전까지 함께 한 사진 등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EEE 학생과의 마찰도 2019. 9. 30. 담임교사의 중재를 통해 개인적인 부분은 서로 해결을 했다고 얘기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강요)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바탕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0. 28.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그 통지서가 2019. 10. 말경 내지 2019. 11. 초경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1.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학생과 직접적으로 언쟁을 하거나 교우관계가 멀어질만한 이유가 없는 점, ○○○○ 학생이 EEE 학생과 다툰 후 같이 다니는 친구들에게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담임교사가 ○○○○ 학생과 EEE 학생을 중재한 자리에서 잘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교우관계가 잘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무리에게 같이 다니자고 물어보고 페이스북의 친구 삭제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먼저 교우관계를 정리한 점, 청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 학생을 대하였고, 이 사건 가해학생들 또한 ○○○○에게 대화를 여러번 시도하였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던 점, 이 사건은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학생이 ○○○○ 학생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 한 것인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쉬는 시간이라서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청구인은 다음 시간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중이라서 다른 학생이 ○○○○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대화를 듣지 못하였으며, 만일 사과를 강요하는 대화를 들었다면 사과를 강요하는 학생이 누구였는지도 알았을 것이며, 제지하거나 말렸을 것인데, 듣지도 못한 대화의 내용 때문에 ○○○○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다고 피청구인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사과를 강요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면사과의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강요’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은 것은 강요의 행위에 동의하고 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사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2019. 9. 25. 당시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 및 ○○○은 인천 ■■■구 ■■■동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다.
- 2) ○○○ 학생은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 교우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먼저 요구하여 2019. 9. 25. 2교시, 3교시 시간에는 학교 복도에서, 3교시 쉬는 시간에는 학교 계단에서 청구인, 이 사건 가해학생들, ○○○ 학생이 함께 모여 교우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 3) 교우관계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정리가 되지 않아 이 사건 가해학생들 중 일부가 ○○○ 학생에게 ○○○ 학생이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자고 하면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 4) ○○○ 학생은 2019. 10. 8. 청구인 및 이 사건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 학교폭력사안으로 신고를 하였다.
- 5)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10. 24. 회의를 개최하여 ○○○ 학생에 대한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이 유형 중 ‘강요’ 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가해 학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강요’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은 것은 강요의 행위에 동의하고 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은 ○○○○ 학생이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 교우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여 모이게 된 점, ② ○○○○ 학생은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 모두가 ○○○○ 학생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측에서 2020. 1. 20. 행정심판 심리에 참석하여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누가 ○○○○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모른다고 한 점에 비추어 ○○○○ 학생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③ ○○○○ 학생은 청구인 및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자신에게 사과를 강요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 학생 주장의 사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점, ④ 당시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만일 ○○○○ 학생이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시 어떠한 위해를 가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위 사과의 요구가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 학생의 요구에 의하여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에서 이 사건 가해학생 중 일부가 우발적으로 ○○○○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 공모하여 ○○○○ 학생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위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학생들 중 일부가 ○○○○ 학생과의 대화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할 시간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청구인이 단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것만 가지고는 강요의 행위에 동의하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가해학생들 중 일부가 ○○○○ 학생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